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284

발의연월일: 2024. 11. 6.

발 의 자: 곽규택・이헌승・정성국

김대식 · 서지영 · 조승환

박수영 · 김소희 · 백종헌

나경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증가,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의 일상화 추세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국가 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최상위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.

또한,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2030년까지 40% 감축)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실천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.

한편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,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.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주도 및 재원확보 체계

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따라서 국가의 기후대응기금 일부가 광역지자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기후대응 정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이를 위해 기금의 용도에 "광역시·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"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70조제10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69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·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0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	제70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
용도에 사용한다.	용도에 사용한다.	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<u>10.</u> 제69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		
	<u>광역시·도의 지역기후대응기</u>		
	금에 대한 재정 지원		
<u>10.</u> · <u>11.</u> (생 략)	<u>11.</u> ・ <u>12.</u> (현행 제10호 및 제11		
	호와 같음)		